



협력사 행동규범

2020. 10. 26

솔브레인홀딩스 그룹 협력사 행동규범('이하 규범'이라 함)은 솔브레인홀딩스 그룹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사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홀딩스 그룹 협력사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근로자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규범에 포함된 모든 조항은 각각 동등하게 중요하고 솔브레인홀딩스 그룹 협력사는 또한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개요

1) 행동규범 목적

최근 산업 동향은 전동화, 디지털화, RPA 서비스의 확산 등 기술 융복합을 통해 전방위적 혁신이 진행 중이며, 솔브레인홀딩스 그룹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극복 하고자 합니다. 솔브레인홀딩스 그룹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은 전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홀딩스 그룹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규범은 *EICC 행동강령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ILO 및 *ISO 등의 기관에서 제정한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은 추가 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브레인홀딩스 그룹 협력사 관리 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규범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과 현지법규상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높은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전자산업시민연대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 행동규범 대상

솔브레인홀딩스 그룹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모든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협력사 책임과 역할

솔브레인홀딩스 그룹의 모든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솔브레인홀딩스 그룹 및 솔브레인홀딩스 그룹의 위탁을 받은 3 자 기관은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솔브레인홀딩스 그룹은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솔브레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솔브레인홀딩스 담당부서를 통해 본 행동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윤 리

1) 투명경영 및 반부패

- ①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2) 이해상충 방지

- ①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 3 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포함해야 합니다.

3) 불공정 거래 방지

-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시장 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④ 협력사는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 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4) 위조부품 방지

①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수출제한 준수

① 협력사는 수출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 관련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솔브레인홀딩스 그룹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6) 정보보호

①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 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7) 책임있는 자재 구매

① 협력사는 Supply chain 전체에 유통되는 원자재의 출처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아프리카 분쟁지역(DR 콩고 등 10 개국)에서 생산되는 4 대 광물로서 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광물 수출을 통한 자금을 내전 및 갈등 조장에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 우려가 되고 있음.

② 협력사는 제품이 분쟁이슈가 존재하는 광물이거나,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재정지원 또는 도움을 주는 국가인 콩고나 인접국가에서 취득되지 않았음을 보증/관리하여야 합니다.

3. 환경

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①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수자원 관리

①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4) 대기오염물질 관리

①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5) 폐기물 관리

①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화학물질 관리

①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4. 노동과 인권

1) 인권 및 노동

① 협력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정규 직원 및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는 노예제도, 인신매매 등 강제노동이 아닌 자발적 노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④ 협력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임금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최저임금 준수, 인도적인 대우 및 차별금지 보장, 가혹 행위 금지 등을 준수 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관리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매 7 일마다 최소 1 일의 휴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안전과 보건

1) 안전 및 보건

- ① 협력사는 산업안전을 위하여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이에 따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산업위생을 위하여 적절한 개별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위험 인자로부터 근로자들의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공간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④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비상상황 대응

- ①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3) 사고 관리

- ①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년 10 월 26 일부로 제정, 시행